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찰서의 장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통지 등 >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4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잠정조치의 결정과 위반 시 제재	5
3. 경찰서의 장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통지	10
4. 잠정조치로 부과된 접근 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7. 8.
3. 회 부 일: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할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 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 또는 검사가 그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u>검사와</u>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u>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u>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u>검사와</u> 피해자 및 스토	④ ----- ----- ----- ---- <u>검사 및 잠정조치의 집행</u>

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톡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후단 신설>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과----

1. ~ 3.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 ④ (현행과 같음)

2. 잠정조치의 결정과 위반 시 제재

가. 잠정조치의 요건과 결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스톱킹범죄의 재발(再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조치 중 하나임.¹⁾

□ 잠정조치는 스톱킹범죄의 재발 우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짐.

○ 검사는 스톱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제8조, 제9조제1항).²⁾

1) 스톱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외에도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톱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

○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피해자와 그 동거인 및 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됨(제9조제1항).³⁾

- 서로 다른 종류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잠정조치기간의 상한은 각종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인데,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필요하다면 2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9조제2항·제7항).⁴⁾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생략)

3) 스톱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스톱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註: 100m 이내 접근 금지)·제3호(註: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및 제3호의2(註: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註: 유치장·구치소 유치)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잠정조치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검사,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에게 잠정
조치결정 사실 등을 통지·고지하여야 함(제9조제5항·제6항).⁵⁾

나. 잠정조치의 변경결정

-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잠정조치 부과의 전제가 된 상황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잠정조치도 그에 맞추어 달라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 내용
변경, 종류 변경 및 취소 또한 인정하고 있음.⁶⁾
- 잠정조치결정에 대한 다양한 변경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스토킹행위자나 검사 등의 신청·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정도 기존 잠정조치결정처럼 검사,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고지되어야 함(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⁷⁾

5)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6) 스토킹처벌법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7) 스토킹처벌법

- 제10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변경 신청은 잠정조치의 종류 자체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이 되는 접근 금지 장소 등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의 신청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음.
- 그 밖에 잠정조치는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실효될 수도 있음. 스토킹행위자를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는 경우 기존의 잠정조치는 실효됨(제11조제5항).⁸⁾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8) 스토킹처벌법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잠정조치의 집행과 그 위반 시 제재

- 잠정조치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이 집행하며, 그 위반 시에는 일정한 제재가 부과됨.
- 잠정조치의 집행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교정직 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 등이 담당하며, 집행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함(제10조).⁹⁾
- 한편,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부과되는데,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잠정조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잠정조치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잠정조치로 부과된 접근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제20조).¹⁰⁾

9) 스토킹처벌법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10)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3. 경찰서의 장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통지

가. 검토의견

- 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은 법원이 잠정조치의 결정이나 그 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잠정조치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원의 잠정조치 관련 결정이나 잠정조치 실효 사실을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잠정조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지의 범위와 상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법률이 경찰서의 장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등에 따라 재판의 집행이 검사에게 맡겨져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사법경찰관리가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경찰서의 장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경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2. · 3. (생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 다만, 개정안은 잠정조치 관련 결정 중 일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의 상대방을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잠정조치 관련 결정 중 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결정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장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은 제10조제4항에서 내용변경결정 시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변경결정에 대하여도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잠정조치결정 시 통지의 상대방을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아직 잠정조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과 같이 그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잠정조치로 부과된 접근 금지 위반 시의 제재 강화

가. 검토의견

- 안 제20조제2항은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려는 것임.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¹¹⁾ 안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는 특히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위반죄의 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¹²⁾
- 어떤 행위가 서로 다른 수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죄구성요건 규정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됨.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특별 규정 등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범죄만이 성립하나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 규정에 의한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벌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의하게 됨.¹³⁾

11)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1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모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겠으나 편의상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위반죄’로 구분함.

13)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특별관계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잠정조치로 부과된 접근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위반죄와 스토킹범죄 모두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¹⁴⁾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접근 금지 위반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접근 금지 위반행위자는 스토킹범죄자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님.

문 의 처
02-6788-5051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